## 대외무역관리제도

수입관리제도

수입상품관리제도

## 화물수출입관리제도

- 수입금지화물, 수입제한화물, 수입자유화물, 관세쿼터관리화물로 분류

수입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제도

- 쿼터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은 매년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
-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무역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 관리품목을 조정

수입상품관리제도

수입쿼터 관리품목 허가증 면제상품

- 가공무역의 수출제품의 직접 가공을 위한 자재
- 외상투자기업의 수출계약을 위한 수입자재

## 수출입허가증 발급기관

- 대외무역경제합작부
-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5개 항구사무소
- 30개 지방정부
- 5개 계획단열도시 대외경제무역청(위원회)

## 수입금지품목

- 무기류, 탄약 및 폭발물
- 위조화폐 및 유가증권
- 유해한 인쇄물, 필름, 사진, 음반, 영화 테이프, 비디오테이프, 레이져 디스크, CD 롬 등
  - 아편, 모르핀, 헤로인, 대마초 등 중독성 및 신경 약물
  - -유해한 동식물 및 동 제품
  - 전염 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능한 식품 및 약품 등

CCC 강제인증제도

개요

- 자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,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
- 2002년 5월 1일 시행, 기존제도와 병행 시행
- 2003년 8월 1일부터 신규 CCC 인증제도가 독립 실시
- 모든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 획득 요함

CCC 강제인증제도 - 제재사항

CCC 인증 취득한 생산, 판매,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

- ① 인증취득 제품의 국가표준 및 기술규칙의 지속성 보장
- ② <리스트>내 제품의 판매 수입 시 우선 인증취득
- ③ 인증취득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마크를 부착
- ④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에 의한 판촉 금지
- 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혹은 부분적 서류 혹은 사본의 양도, 매매 금지
- ⑥ 각지 품질검사부문 및 지정 인증기관의 감독검사 혹은 추적검사를 접수

미이행시 제재사항

① <리스트>내 제품이 미 인증취득 했을 시, 3만元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유효기일 내에 인증을 취득하도록 함.

인증증서 취득 제품이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, 기한 내에 수 정하도록 강요하며, 기한이 지난 경우1만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.

- ③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,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가, 상품품질인증 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.
- ④ 지정 인정기관 및 그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, 법에 따라 대응되는 책임을 져야함